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2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(2023.12.31.)이 도래함에 따라,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2조의2)
- 회계는 교통관리계정·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, 교통개선 분담금계정은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함(안 제4조 및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,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
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'23. 6. 15.~7. 5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임고은 (☎2133-2217)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2(존속기한)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교통관리계정·교통개선분담금계정·주차장관리계정”을 “교통관리계정·주차장관리계정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

제6조제2항제4호 중 “대폐차:”를 “代廢車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 및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규정된 것 이외”를 “규정한 것 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정의 구분 및 계정별 세입·세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 및 제6조,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존속기한) <u>특별회계의</u> <u>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의2(존속기한) 회계의 <u>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
<p>제4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<u>교통관리계정 · 교통개선분담금계정 · 주차장관리계정</u>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</p>	<p>제4조(계정의 구분) ----- <u>교통관리계정 · 주차장관리계정</u>-----</p>
<p>제6조(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<u>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--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</u></p>
<p>10. (생략)</p> <p>② <u>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</u></p>	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립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등으로 한다.

②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출은 해당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시행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의 해당 교통 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.

제13조(준용) ----- 규정한 것 외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임고은 (02-2133-2217)